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등 내용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1. 22. ~ 1. 29.(7일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자치 경찰 위원 회	부산 광역시 자치 경찰 위원 회	대구 광역시 자치 경찰 위원 회	인천 광역시 자치 경찰 위원 회	광주 광역시 자치 경찰 위원 회	대전 광역시 자치 경찰 위원 회	울산 광역시 자치 경찰 위원 회	경기 도 자치 경찰 위원 회	강원 도 자치 경찰 위원 회	충청 북도 자치 경찰 위원 회	충청 남도 자치 경찰 위원 회	전라 북도 자치 경찰 위원 회	전라 남도 자치 경찰 위원 회	경상 북도 자치 경찰 위원 회	경상 남도 자치 경찰 위원 회	제주 특별 자치 도 자치 경찰 위원 회
총계	48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총경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정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경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0663